

위 법 계 약 해 지 요 구 신 청 서

BNK 투자증권

■ 고객 정보

계좌번호		계좌명	
생년월일 / 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
주소			

■ 고객의 계약해지 내용

계약해지대상 상품명	
계약체결일	
투자성 상품	☐ 수수료 납부일 : ☐ 계약서류 수령일 :
대출성 상품	☐ 대출금 지급일 :
계약해지 사유	☐ 적합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7③) ☐ 적정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8②) ☐ 설명의무 위반 (금소법 §19①, ③) ☐ 불공정영업행위 (금소법 §20①) ☐ 부당권유금지 위반 (금소법 §21)
결과 통지 방법	☐ 방문 ☐ 우편 ☐ E-mail ☐ 기타

■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

증빙자료	
참고자료	

■ 고객 확인사항

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“확인함”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이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계약임을 확인하며, 위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.	확인함
--	-----

※ 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
※ 위법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
※ 당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“정당한 사유”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※ 상장주식, ETF 등 장내거래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